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연월일 : 2002년 10월 3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 문화재용역사업·수리공사 평가를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정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문화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함. (제6조제1항)
- 행정부지사가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제7조제2항)
- 문화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제25조의2)
-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지역(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안에서 허가 등을 하기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함. (제27조의2)

 의안전문 : 따로붙임 신·구문대비표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사적지”를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보유자”를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제3항중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중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도 또는 시·군이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설공사시 다음과 각호의 지역 범위안에서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 등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도지사는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제2항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중 “보조자”를 각각 “조교”로 한다.

제3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도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의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의하여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생략) 1.~2 (생략) 3. 기념물: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u>사적지</u>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다. (생략) ②~③ (생략)</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가. ----- -----<u>사적지</u>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 나.~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심의사항) 1.~2. (생략) 3.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u>보유자</u>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p>	<p>제5조(심의사항) 1.~2 (현행과 같음) 3. ----- ----- <u>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u> -----</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p>	<p>제6조(구성) ① ----- <u>25인</u> 이내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제9조(분과위원회) ①~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진 실></u></p>	<p>제9조(분과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u><삭 제></u> -----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생략)</p>	<p>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인정하여야 한다.</u>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u><신설></u></p>	<p>⑤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① ----- ----- ----- ②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p>	<p>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 -----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p>
<p>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③ (생략)</p> <p>④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p>	<p>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의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④ (생략)</p>	<p>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⑥ (생략)</p>	<p>⑤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도 또는 시·군이 지원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5조의2(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유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허가사항)</p> <p>1.~2. (생략)</p> <p>3. <u>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u>.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p>	<p>제27조(허가사항)</p> <p>1.~2. (현행과 같음)</p> <p>3. <u>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u>로써 규칙이 정하는 행위.</p>
<p><신설></p>	<p>제27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①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설공사시 다음 각호의 지역 범위안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p> <p>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위원회의 위원 등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자문을 받아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8조(반출금지) ①도지정문화재와 가 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 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 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 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국 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8조(반출금지) ①도지정문화재 --- ----- ----- 2년 ----- ----- ② ----- ----- ----- 2년 ----- ----- ③도지사는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 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p>
<p>제29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생략)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 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 기 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 설> <신 설></p>	<p>제29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1조(전수교육 보조자) ①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p>	<p>제31조(전수교육 조교) ①----- ----- ----- -----</p>

현행	개정안
<p>부담은 자증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4조(신고사항) 1.~8 (생략) <신설></p>	<p>----- ----- <u>조교</u> ----- ----- ② ----- ----- <u>조교</u> ----- ----- -----</p> <p>제34조(신고사항) 1.~8 (현행과 같음) 9. <u>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u></p>
<p>제39조(공개)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9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도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의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③도지사는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④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② (생략)</p> <p>③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p>	<p>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p>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의10(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21조(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 9. 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3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와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전수교육 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